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일반임기제 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5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부서	담당직무 내용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1명	1년	주40시간	위원회 (전문위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조사·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취합·분석 지원- 의원 연구단체 및 의원정책개발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지원□ 기타 의정활동업무 지원

2.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제27조(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규칙 등

3. 응시자격 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 : 18세 이상인 자 (2006.12.31.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이하“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행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 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 . 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임용분야 자격기준 (아래 자격요건 중 각 호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구 분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정책지원관 (임기제 7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포함),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 된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u>법제, 법률해석, 지방행정, 지방자치, 감사, 예산 등 관련분야 연구·조사·분석·입법조사·입법지원 및 의원보좌 등 정책지원관 직무와 관련된 근무경력</u>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임용요건

○ 임용일자 : 2024. 4. 5. **【예정】**

※ 임용일자는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 임용예정자의 개인사유(이사, 퇴직처리, 소요기간 필요 등)로 인하여 임용일자가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된 일수만큼 계약기간에서 공제함

○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시간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 [별표13]에 따라 연봉 하한액으로 책정

구 분	하 한 액	비 고
일반임기제7급(상당)	47,157천원	주40시간 근무기준 (09:00~18:00, 1일8시간, 주5일근무)

○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대민활동비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 연금, 건강·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모 집 공 고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 표 일
'24. 3. 5.(화) ~ 3. 14.(목)	'24. 3. 12.(화) ~ 3. 14.(목)	'24. 3. 18.(월) [예정]	'24. 3. 26.(화) [예정]	'24. 3. 26.(화) 18:00 [예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합격자 발표 : 동대문구의회 누리집(http://council.ddm.go.kr) [고시/공고]란에 공지 (합격자 개별 통지 예정) ※ 시험일정은 서류검증, 기관 사정(재공고 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3. 12.(화) ~ 3. 14.(목), < 3일간, 09:00~18:00 >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대리접수 가능(응시자 신분증, 대리자 신분증 지참)
- 접수처 : (우) 0256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45(용두동) 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인사관리팀 채용담당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2024년 상반기 정책지원관 채용 응시원서 재증' 기재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를 SMS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 원본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해당 수입증지 수수료 비용만큼 통상환증서(우체국 판매) 구입 동봉
※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16:30) 유의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기준에 의거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대문구의회 인사규칙 제15조)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를 통한 추가접수 후 2차 면접대상자 최종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중·하로 위원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 평정요소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 “하” 로 평정 또는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 로 평정한 자,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차순위 득점자순으로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최종합격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로 선정함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의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사항)

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나.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 ※ 동대문구청 재무과(6층)에서 수입증지 구매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 ※ 우편접수 시 수수료 비용만큼 통상환 증서(우체국 판매) 구입 동봉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다.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라. 자기소개서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바.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경력증명) 제출
- 해당 경력을 명확히 할 수 없거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경력인정 불가

사.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아.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자.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가. 경력 관련 증빙자료 및 관련 자격증 사본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문제 등) [별지8]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및 경력관련 자격증 사본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대문구의회 누리집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응시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같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구의회 의회사무국 인사관리팀 채용담당 ☎ 02-2127-5692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위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1명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 · 조사 · 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의원연구단체 및 연구용역, 입법 법률고문·자문단 운영 ▶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 분석 ·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마인드(협업의식) ▶ (직급별 역량) 성실성, 조직헌신, 협조성, 업무이해력, 문제해결능력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조례안과 예 · 결산안에 대한 이해 · 분석 능력 ▶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 분석 · 조사 능력 ▶ 의원의 연구 및 입법 활동 지원 능력 ▶ 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 및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지식 ▶ 지방의회 기능 및 운영에 대한 배경 지식과 입법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 		
응시자격요건	공 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 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2. 연령 : 18세 이상 (2006.12.31.이전 출생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직 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직무경력 인정범위)</p> <p>-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출자 · 출연기관 포함), 공공기관(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서 지정 alio.go.kr),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u>법제, 법률해석, 지방행정, 지방자치, 감사, 예산 등 관련 입법조사 · 지원, 의원보좌 등 정책지원관 직무에 관련된 근무경력</u></p>	